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171 호 2019. 4. 25.(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72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75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76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77호[송정동 통·반 조정 공고] .....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80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81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82호[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 9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03호[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07호[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공고] .....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09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10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6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li> <li>☞ 북구 홈페이지(<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72호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오 용 길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창좌길 40-5(시례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지하수 시설(관정)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시례동 3-1

나. 면적 : 1.21㎡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2019. 4. 15. ~ 2023.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75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허가 연월일 : 2019. 4. 22.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석축, 천단 혈기 및 옹벽 설치 공사)
3. 점용·사용의 장소 : 대안동 1059-1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7m<sup>2</sup>
  - 나. 기 간 - 2019. 04. 29. ~ 2019. 05. 05.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김 용 길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동해안로 161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76호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안전정보과)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설치(재난 CCTV 설치)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호계동 943-43번지 외 5개소

나. 면적 : 0.6㎡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2019. 4. 23. ~ 영구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77호

## 송정동 통·반 조정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통·반 조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시행일자 : 2019. 4. 25.

통·반 조정내역

구 분	통			반			비고
	현 행	조 정	증 감	현 행	조 정	증 감	
계	257	258	증 1	2,396	2,411	증 15	
농소1동	35	35	-	418	418	-	
농소2동	44	44	-	486	486	-	
농소3동	39	39	-	427	427	-	
강동동	32	32	-	204	204	-	
효문동	34	34	-	300	300	-	
송정동	31	32	증 1	297	312	증 15	
양정동	20	20	-	123	123	-	
염포동	22	22	-	141	14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80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15길 43 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4.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10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55-18	2019-04-25	기존 자연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4-08
2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산 60-13	울산광역시 북구	아랫울동 2길 26-68	2019-04-25	울동은 밤나무가 많아 밤나무골이라 이름 지어진것으로 오늘날도 울동으로 불리고 있고 주민들에 친근한 이름, 울동의 아래쪽을 말하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3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산179-1	울산광역시 북구	성내5길 21	2019-04-25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현재도 사용중인 마을이름으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4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408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만석골 길 48	2019-04-25	옛날 만석꾼이 살았던 곳이라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 건의에 의해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8-02-29
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31-2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 15길 43	2019-04-25	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 명칭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함.	2017-05-04
6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88	울산광역시 북구	창좌길 38-14	2019-04-25	기존 자연마을인 창좌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7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D8B 1L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 6길 11	2019-04-25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31-11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 22길 4	2019-04-25	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 명칭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함.	2017-05-04
9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78-3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1길 38-6	2019-04-25	상방마을 영조때 상방리라 불러 상방마을의 유래가 되었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1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87-4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로 22	2019-04-25	법정동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1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지 구A1B 2L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1길 4	2019-04-25	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 명칭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함.	2017-05-04
12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23-27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27-6	2019-04-25	기존 지명인 신답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8-03-11
1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 구 53B 13-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7길 13	2019-04-25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14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56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소공원 로 8	2019-04-25	법정동 명칭과 공원명의 조합으로 위치 예측성 확보	2011-08-1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81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진장17길 13	진장명촌지구53B 13-1L	2019. 4. 25.	건축물멸실
달천만석골길 48	달천동 408	2019. 4. 25.	건축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4. 25.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82호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1. 고 시 일 : 2019. 4. 25.(목)
- 2. 고시방법 : 공보,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1개
- 4.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변경 요건과 절차

<b>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b>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b>주민 의견 수렴 공고</b>	주민의견수렴 한 날부터 ⇒ 30일 이내	<b>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b>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b>공고 및 신청인 통보</b>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b>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b>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b>고시 및 신청인 통보</b>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변경내용 및 절차		<b>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b>	동의 만료일부 부터 ⇒ 10일 이내	<b>공고 및 신청인 통보</b>	결과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부여 고시 조서 및 도면.

# 붙임 1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조서 및 도면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조서

일련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길이(m)	폭(m)	기초간격(m)	기초번호		도로위계	결정도로명	부여사유	유사도로명/동일도로명
							시작	끝				
1	호계동 693-22	호계동 715-36	노선도 참조	250	8	20	1	26	길	호계1길	인근도로명과 연계하여 일련번호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로명 부여	* 호계로 * 호계1길~호계10길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면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9 - 503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거주 1개월 미만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을 통합하고자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변경(안 제3조 및 제5조)
  -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거주 →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거주
- 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추가(안 제2조, 제4조 및 제6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부칙)
- 다. 다자녀가정 용어 정의(안 제2조 및 제4조)
  -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

#### 3. 근거법규

-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052)241-7653, 팩스번호 : 052)241-765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장애인가정”이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 6.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를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일 전후로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기준”을 “지원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을”을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출산지원금
- 2. 출산축하용품
- 3.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4. 다자녀가정 대상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혜택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출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된 장애정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장애인가정”이란 영아의 부모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p> <p>6.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p>
<p>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일 전후로 1개월 이상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기준)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산축하용품은 첫째자녀에 한하며,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p> <p>&lt;신설&gt;</p>	<p>제4조(지원내용) ① ----- ----- ---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 ----- . &lt;단서 삭제&gt;</p> <p>1. 출산지원금</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5조(지원신청) ① (생 략)

②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1. ~ 3. (생 략)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출산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2. 출산축하용품

3.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4. 다자녀가정 대상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혜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6개월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① -----  
-----  
-----  
-----  
-----  
-----.

1.·2. (현행과 같음)

3. 출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된 장애 정도

② (현행과 같음)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 507호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3항 및 제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안)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25.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고 시 일 : 2019. 4. 25.(목)

2. 고시방법 : 공보, 구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명 변경(중속구간 도로명부여) : 중보<sup>1</sup>길, 아진<sup>2</sup>로<sup>2</sup>개 구간

※ 세부사항은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조서 및 도면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b>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b>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b>주민 의견 수렴 공고</b>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b>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b>	심의 마친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b>공고 및 신청인 통보</b>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b>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b>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b>고시 및 신청인 통보</b>
-심의결과 -변경내용 및 절차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b>서면동의를 못 받은 경우</b>	동의 만료일부턴 ⇒ 10일 이내	<b>공고 및 신청인 통보</b>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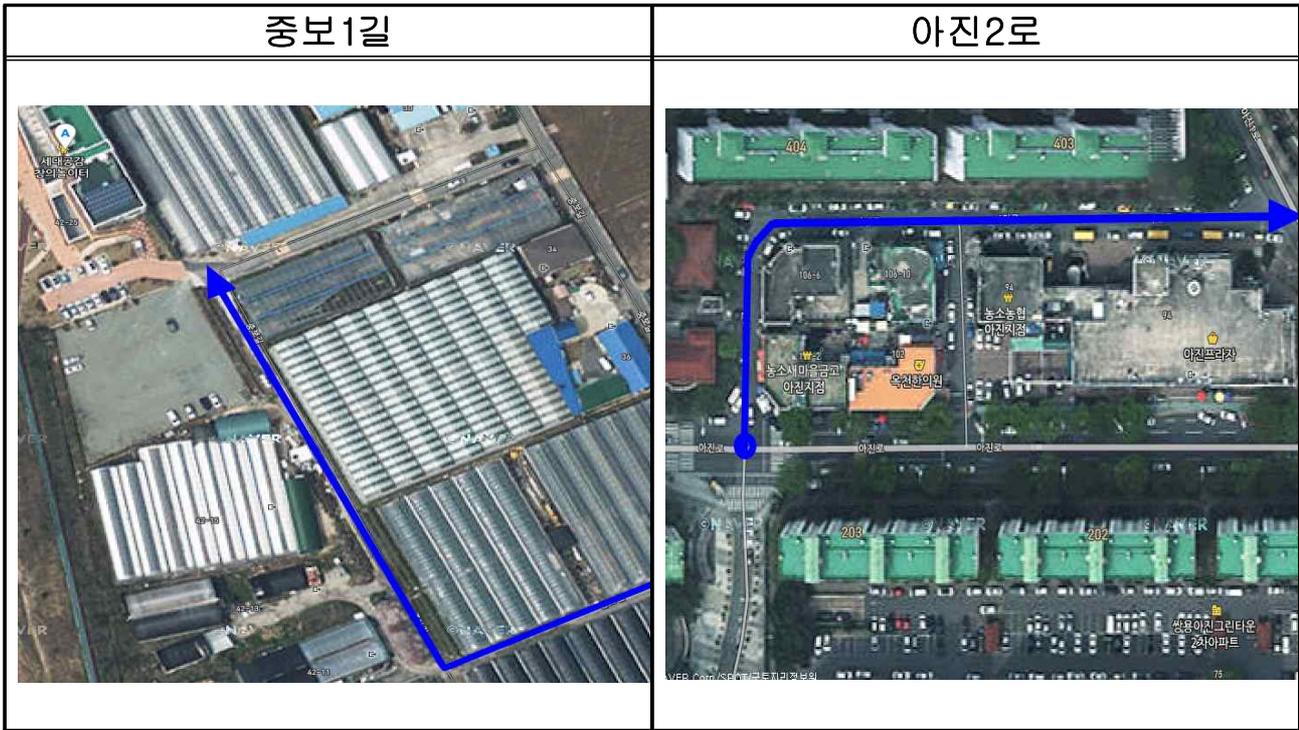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 변경(중속구간 도로명부여) 심의결과 조서 및 도면**

일련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도로중심선	길이(m)	폭(m)	기초간격(m)	기초번호	도로위계	심의결과	부여사유	유사도로명	비고
1	중산동 1104-3	중산동 1104-9	노선도 참조	242	4	20	1-26	길	중보1길	인근 중보길 위치연계를 고려하여 일련번호 방식으로 부여	중보길	기존 중보길 중속구간
2	천곡동 410-17	천곡동 410-17	노선도 참조	202	11	20	1-22	로	아진2로	인근 아진1로 위치연계를 고려하여 일련번호 방식으로 부여	아진1로	기존 아진로 중속구간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도면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9 - 509 호

##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특수규격 종량제 시행(2019. 7. 1.)에 따라 이에 맞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2항 조문 수정
- 나.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제1항 조문 수정
- 나.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항제1호 별표3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추가 및 제5호 삭제, 제2항 조문 수정

#### 3.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전화번호 : 052)241-7804, 팩스번호 : 052)241-780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하고,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를 “폐기물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고”를 “하고, 특수규격 쓰레기봉투에는 5톤 미만 불연성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의”를 “제1항제4호의 대형폐기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는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물과 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  
 ----- 하고,  
특수규격 쓰레기봉투에는 5톤 미만 불연성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  
 -----  
 -----.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  
 -----  
 -----  
 -----  
 -----.

- 1. ~ 4. (생략)
- 5.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다.

- 1. ~ 4. (현행과 같음)
- 5. <삭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는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② 제1항제4호의 대형폐기물-----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3】 &lt;개정 02·12·27, 06·12·29, 08·9·16, 08·12·18&gt;

##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관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일 반 용	5 ℓ	90	39	19	148	12	160
	10 ℓ	205	57	25	287	23	310
	20 ℓ	410	93	52	555	45	600
	50 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75 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100 ℓ	2,049	430	256	2,735	225	2,960
특 수 규 격	30 ℓ	1,302	443	220	1,965	195	2,160
	50 ℓ	2,170	737	259	3,166	314	3,480

## 【별표 5】 &lt;삭제&gt;

##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수수료

(단위 : 원)

대 상	기 준	수집·운반·처리비	
		수집·운반비	처 리 비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	톤당	30,000	시 조례의 반입수수료 규정에 의함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9 - 510 호

##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특수규격 종량제 시행(2019. 7. 1.)에 따라 이에 맞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2조의2(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재질규격 등) 제1항 별표4 특수규격용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추가 및 제2항 별표5 특수규격용 쓰레기봉투 모형추가
- 나.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1항 조문 수정, 별지 제2호서식 수정 및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 나. 제9조(쓰레기봉투판매자 준수사항) 제2호 별표2 특수규격용 쓰레기봉투 가격추가

#### 3.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전화번호 : 052)241-7804, 팩스번호 : 052)241-780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형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을 “대형 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하고,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내역(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 및 별지 제2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은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b>【별표 2】</b></p> <p style="text-align: center;"><b>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제9조제2호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용도</td> <td>일반용</td> </tr> <tr> <td>색상</td> <td>녹 색</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가 격</td> </tr> <tr> <td style="border: none;">용 량</td> <td style="border: none;">판 매 가 격</td> </tr> <tr> <td>5 ℓ</td> <td>160원</td> </tr> <tr> <td>10 ℓ</td> <td>310원</td> </tr> <tr> <td>20 ℓ</td> <td>600원</td> </tr> <tr> <td>50 ℓ</td> <td>1,490원</td> </tr> <tr> <td>75 ℓ</td> <td>2,220원</td> </tr> <tr> <td>100 ℓ</td> <td>2,960원</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b>울산광역시 북구청장</b></p>	용도	일반용	색상	녹 색	\	가 격	용 량	판 매 가 격	5 ℓ	160원	10 ℓ	310원	20 ℓ	600원	50 ℓ	1,490원	75 ℓ	2,220원	100 ℓ	2,960원	<p><b>【별표 2】</b></p> <p style="text-align: center;"><b>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제9조제2호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용도</td> <td>일반용</td> </tr> <tr> <td>색상</td> <td>녹 색</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가 격</td> </tr> <tr> <td style="border: none;">용 량</td> <td style="border: none;">판 매 가 격</td> </tr> <tr> <td>5 ℓ</td> <td>160원</td> </tr> <tr> <td>10 ℓ</td> <td>310원</td> </tr> <tr> <td>20 ℓ</td> <td>600원</td> </tr> <tr> <td>50 ℓ</td> <td>1,490원</td> </tr> <tr> <td>75 ℓ</td> <td>2,220원</td> </tr> <tr> <td>100 ℓ</td> <td>2,960원</td> </tr> <tr> <td style="border: none;">용도</td> <td style="border: none;">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td> </tr> <tr> <td>색상</td> <td>노 란 색</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가 격</td> </tr> <tr> <td style="border: none;">용 량</td> <td style="border: none;">판 매 가 격</td> </tr> <tr> <td>30 ℓ</td> <td>2,160원</td> </tr> <tr> <td>50 ℓ</td> <td>3,480원</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b>울산광역시 북구청장</b></p>	용도	일반용	색상	녹 색	\	가 격	용 량	판 매 가 격	5 ℓ	160원	10 ℓ	310원	20 ℓ	600원	50 ℓ	1,490원	75 ℓ	2,220원	100 ℓ	2,960원	용도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색상	노 란 색	\	가 격	용 량	판 매 가 격	30 ℓ	2,160원	50 ℓ	3,480원
용도	일반용																																																				
색상	녹 색																																																				
\	가 격																																																				
용 량	판 매 가 격																																																				
5 ℓ	160원																																																				
10 ℓ	310원																																																				
20 ℓ	600원																																																				
50 ℓ	1,490원																																																				
75 ℓ	2,220원																																																				
100 ℓ	2,960원																																																				
용도	일반용																																																				
색상	녹 색																																																				
\	가 격																																																				
용 량	판 매 가 격																																																				
5 ℓ	160원																																																				
10 ℓ	310원																																																				
20 ℓ	600원																																																				
50 ℓ	1,490원																																																				
75 ℓ	2,220원																																																				
100 ℓ	2,960원																																																				
용도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색상	노 란 색																																																				
\	가 격																																																				
용 량	판 매 가 격																																																				
30 ℓ	2,160원																																																				
50 ℓ	3,480원																																																				
<p><b>【별표 4】</b></p> <p style="text-align: center;"><b>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 및 색상(제2조의2제1항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용 량</td> <td>용 도</td> </tr> <tr> <td>5 ℓ</td> <td>일반용, 제사용</td> </tr> <tr> <td>10 ℓ</td> <td>일반용, 제사용</td> </tr> <tr> <td>20 ℓ</td> <td>일반용, 제사용</td> </tr> <tr> <td>50 ℓ</td> <td>일반용</td> </tr> <tr> <td>75 ℓ</td> <td>일반용</td> </tr> <tr> <td>100 ℓ</td> <td>일반용, 공공용</td> </tr> </table> <p>(주) ① 쓰레기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부를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거나, 끈을 달아서 쓰레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② 색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용 → 녹색</li> <li>○ 공공용 → 옅은 청색</li> <li>○ 제사용 → 흰색</li> </ul>	용 량	용 도	5 ℓ	일반용, 제사용	10 ℓ	일반용, 제사용	20 ℓ	일반용, 제사용	50 ℓ	일반용	75 ℓ	일반용	100 ℓ	일반용, 공공용	<p><b>【별표 4】</b></p> <p style="text-align: center;"><b>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 및 색상(제2조의2제1항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용 량</td> <td>용 도</td> </tr> <tr> <td>5 ℓ</td> <td>일반용, 제사용</td> </tr> <tr> <td>10 ℓ</td> <td>일반용, 제사용</td> </tr> <tr> <td>20 ℓ</td> <td>일반용, 제사용</td> </tr> <tr> <td>50 ℓ</td> <td>일반용</td> </tr> <tr> <td>75 ℓ</td> <td>일반용</td> </tr> <tr> <td>100 ℓ</td> <td>일반용, 공공용</td> </tr> <tr> <td>30 ℓ</td> <td>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td> </tr> <tr> <td>50 ℓ</td> <td>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td> </tr> </table> <p>(주) ① 쓰레기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부를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거나, 끈을 달아서 쓰레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② 색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용 → 녹색</li> <li>○ 공공용 → 옅은 청색</li> <li>○ 제사용 → 흰색</li> <li>○ 특수규격용 → 노란색</li> </ul>	용 량	용 도	5 ℓ	일반용, 제사용	10 ℓ	일반용, 제사용	20 ℓ	일반용, 제사용	50 ℓ	일반용	75 ℓ	일반용	100 ℓ	일반용, 공공용	30 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50 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용 량	용 도																																																				
5 ℓ	일반용, 제사용																																																				
10 ℓ	일반용, 제사용																																																				
20 ℓ	일반용, 제사용																																																				
50 ℓ	일반용																																																				
75 ℓ	일반용																																																				
100 ℓ	일반용, 공공용																																																				
용 량	용 도																																																				
5 ℓ	일반용, 제사용																																																				
10 ℓ	일반용, 제사용																																																				
20 ℓ	일반용, 제사용																																																				
50 ℓ	일반용																																																				
75 ℓ	일반용																																																				
100 ℓ	일반용, 공공용																																																				
30 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50 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별표 2】 <개정 02·12·27, 07·1·22, 08·12·1>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제9조제2호 관련)

용도	일반용
색상	녹 색
가격 용량	판 매 가 격
5 l	160원
10 l	310원
20 l	600원
50 l	1,490원
75 l	2,220원
100 l	2,960원
용도	특수규격 봉투(공사장생활폐기물)
색상	녹 색
가격 용량	판 매 가 격
30 l	2,160원
50 l	3,480원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별표 4】 <개정 13·12·12, 15. 11. 26.>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 및 색상(제2조의2제1항 관련)

용량	용도
5 l	일반용, 재사용
10 l	일반용, 재사용
20 l	일반용, 재사용
50 l	일반용
75 l	일반용
100 l	일반용, 공공용
30 l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50 l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주) ① 쓰레기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거나, 끈을 달아서 쓰레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색 상

- 일반용 → 녹색
- 공공용 → 엷은 청색
- 재사용 → 흰색
- 특수규격 → 노란색

## 【별표 5】 &lt;신설 08·12·1&gt;

## 쓰레기봉투 재질규격 및 모형(제2조의2제2항 관련)

□ 쓰레기봉투 재질 및 규격 등

종류 (용량)	높이 (cm)	나비 (cm)	두께 (mm)	인장강도 (N/mm <sup>2</sup> )	신장률 (%)	인열강도(N/mm <sup>2</sup> )	
						보통	접은 곳
5ℓ	46.5	26	0.030	26.5↑ (270) [810]	300↑	117.6↑ (120) [360]	88.2↑ (90) [270]
10ℓ	56.5	33	0.030	26.5↑ (270) [810]	300↑	117.6↑ (120) [360]	88.2↑ (90) [270]
20ℓ	69.5	42	0.035	26.5↑ (270) [945]	300↑	117.6↑ (120) [420]	88.2↑ (90) [315]
30ℓ	78.5	48	0.035	26.5↑ (270) [945]	300↑	117.6↑ (120) [420]	88.2↑ (90) [315]
50ℓ	91.5	56	0.045	26.5↑ (270) [1215]	300↑	117.6↑ (120) [540]	88.2↑ (90) [405]
75ℓ	103.5	65	0.050	26.5↑ (270) [1350]	300↑	117.6↑ (120) [600]	88.2↑ (90) [450]
100ℓ	113.5	71	0.055	26.5↑ (270) [1485]	300↑	117.6↑ (120) [660]	88.2↑ (90) [495]

※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에서 ( )은 각각 Kg/cm<sup>2</sup> 및 Kg/cm, [ ]는 최대 하중(g)으로 환산한 값임.

(주) 재질규격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 쓰레기봉투 모형

1. 묶는 쓰레기봉투

○ 일반용

이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

○ 공공용

**공공용 쓰레기봉투**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

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쓰레기봉투 묶는 표시는 50ℓ, 75ℓ, 100ℓ 봉투만 해당된다.

2. 끈 달린 쓰레기봉투

○ 일반용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쓰레기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

○ 공공용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공공용 쓰레기봉투**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

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수규격용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p>특수규격 쓰레기봉투</p> <p>-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봉투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과 불연성 쓰레기 처리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li> <li>2.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이 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3. 이 봉투 이외의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li> </ol>
배출 후 수거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2. 6. 11>

공사장 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단위 : 개)

연번	접수 일시	신고자 (배출자)			용량 (특수규격용)	수 량	수거일시	담당확인
		장소 (주소)	성명	연락처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